은평서 범죄예방계 불법체류자 업무처리 흥	종류
------------------------	----

1. 불법체류자 단순 신고	-신고자에게 출입국관서에 신고하도록 <mark>안내</mark> 및 출입국관서에 해당 사실 <mark>통보</mark>
폭행 등 별건 형사 2. 사건이 경합된 불법 체류자 검거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 후 출입국관서에 인계 <u>(붙임 2)</u>
폭행 등 별건 형사 3. 사건이 경합된 불법 체류자 검거한 경우	-별건 형사사건 담당 주무부서에 불법체류자 신병 및 kics 사건 인계
주취 불법체류자를 4. 검거한 경우	-보호조치 필요성 판단(붙임 5)(술에 취해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 <u>주취자 응급상황 체크리스트(붙임 6)</u> 上 <u>'중증이상'</u> 인 경우에만 보호조치/ '경증'은 출입국관리소 인계
부상 불법체류자를 5. 검거한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응급구호) 후 출입국관리소 인계 ※인계를 받은 출입국관리소는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조치 가능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후 응급의료종사자의 소견서* 등을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 *입원치료가 불필요, 응급조치 완료되어 보호시설 수감 가능하다는 취지 -장기간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붙임 3) 및 입건 필요성 검토 ※이미 입건한 경우, 출입국관서에 신병인수를 거부 시 그 사유를 수사보고서 또는 온나라 공문 등에 기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붙임7) 응급처치 필요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음
6. 범죄피해자인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대상, kics 사건처리 시 면제 대상임을 기재, 진술서 작성 후 귀가조치 <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 • (형법上 범죄) 살인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 (특별법上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제46조)
출입국관서에서 부당하게 7.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출입국담당자에게 '인수거부증' 수령 후 署 상황실 보고 및 시도청 형사과(강력계) 사실관계 통보(공문) -인계가 계속 지연되는 경우 유치장에 입감, 체포시한 만료 전 인수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未인수시 석방)

붙임1

서울 출입국관서 연락처 (※신병인수 관서 음영)

	출입국청(사무소)	연락처(야간)	출장소	연락처(야간)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02-2110-4079, 4083	_	_
2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양천구 목동동로151]	02-2650-6214 (02-2650-6333)	세종로출장소	02-731-1799
3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서구 마곡서1로48]	02-6980-4812 (02-6980-4711)	_	





00시·도경찰청

수신 OO출입국관리사무소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체류자 신병 인계 통보

아래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체류기간 만료) 위반자로 확인되어 귀 기관에 신병 및 사건을 인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국 적: 〇〇

외국인등록번호: 700000-6000000

2. 발견 일시 및 장소

2020. 06. 14. 05:20경 ○○○ ○○○시 ○○○구 ○○동 소재 "○○노래방"

3. 발견 경위

외국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NO.0000)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있던 ○○○의 신원을 조회한 바, 2018.5월 체류기간이 만료 된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여 발견

4. 범죄사실 (*단순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죄사실 작성)

피의자 ㅇㅇㅇ는 '17.00.00.00:00경, ○○○시 ○○○구 ○○동 소재 "○○노래방" 2호실 내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5. 관련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 6. 경찰의견 : 例1: 피의자의 00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음

例2: 피의자의 00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음

7. 담당 경찰관 : ○○시도경찰청 ○○경찰서 순경 홍길동



00시·도경찰청

수신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체류자 발견 통보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만료)자를 발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

적 : ○○ 국

외국인등록번호 : 700000-6000000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을시 여권번호 등)

2. 발견 일시 및 장소

2018. 06. 14. 05:20경 ○○○ ○○○시 ○○○구 ○○동 소재 "○○병원"

3. 발견 경위

불법체류자가 병원에 있다는 112신고(NO.0000)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발견

4. 출입국관리법 미입건 사유

대상자는 현재 ~~질병으로 입원중인 상태로 거동이 불가능하며, 해당 내용을 2018. 06. 15. 00:00경 00출입국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였음. 00출입국사무소 000 주무관은 치 료가 완료된 후에야 신병을 인수할 수 있다는 상황으로,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건하더라도 인계가 불가능함.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 입건하지 않았음

- 5. 관련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 6. 요청사항 : 인권보호차원에서 대상자 완치까지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비자(G-1등) 발급 등을 검토하고, 치료 종료 시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
- 7. 담당 경찰관 : ○○시도경찰청 ○○경찰서 순경 홍길동

주취자 관찰 판단의 기준

관찰대상	관찰요령	변화상태	예상위험
동공	.움직임이상 .크기이상 .모양이상 .좌우이상	.동공 반응이 없다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다 .변형 .위치의 비틀어짐	.반응이 없으면 병중 이나 상처 .만취나 외상 .선천성이외는 신체이상 .사망
감각반응	.팔, 다리를 꼬집어 얼 굴 변화를 살핌	.반응이 없는 경우나 수족의 마비가 일어남 .수족의 경련	.병이나 만취 .뇌내출혈
맥박	.맥박의 측정 (정상맥 65-80)	.빠르거나 약하거나 크고 느리거나 약해서 셀 수 없는 경우	.만취, 병중, 상처
호흡	.호흡의 강약, 깊이를 살핌(회수 20회)	.호흡이 약하다(회수가 많다) .심하게 코를 곤다 .입에 거품을 낸다	.약물중독, 뇌빈혈 .뇌내출혈, 뇌졸중, 토사 물에 의한 질식 .간질병
냄새	.입에서 다른 냄새가 나는지 여부	.약냄새가 난다 .소변냄새가 난다 .사과 썩는 냄새가 난다 .초콜렛 색의 토사물	.약물복용(수면제) .요도염 .당뇨병 .간장병
외상	.머리나 안면의 부상	.머리의 혹이나 찰과상	.뇌내출혈 등
안색	.평소의 안색과 비교	.안색이 빨갛다 .안색이 창백하다 .안색이 자색이다	.뇌내출혈, 뇌졸중 .뇌빈혈, 약물중독 .순환기, 호흡기 장애
체온	.흉부에 손을 대어 봄	.체온이 저하되고 있다	.신장 쇠약으로 위험

주취자 응급상황 체크 리스트

※ 경찰이 주취자를 발견하였을 때,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해야할 대상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순서대로 체크하시고 하시고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화살표 조치대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십시오

□ 주취자 성명 : □ 성별: □□ 일시 : . :	나이 :	세			
1. 주취자가 <u>의식손실</u> 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하나라도 예에 해당하면, 의식손실)					
① 의식이 없습니까?	예 🗆	Tal	응급 의료		
② 자극(꼬집었을 때)에만 반응이 있습니까?	예 🗆	조치	센터		
2. 의식있는 주취자가 중증인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하나라도	. 예에 해당하면	, 중증)		
① 숨이 가쁩니까?	예 🗆				
② 피가 섞인 구토나 배변을 합니까?	예 🗆				
③ 가슴통증을 호소합니까?	예 🗆		응급		
④ 약물(마약 및 기타약물)을 과다복용하였습니까?	예 🗆	조치	의료		
⑤ 자신을 해치려고 합니까?	예 🗆		센터		
⑥ 신체일부가 절단, 골절, 마비가 있습니까?	예 🗆				
① 머리에 상처가 있거나 피가 납니까?	예 🗆				
① 보호조치 필요한 중증 이상 주취자(1~2번, 푸른색 음영)① 1					
3. 의식있는 주취자가 <u>경증</u> 인지 알아보는 질문입니다(하나	라도 예어	해당하면, 경증))		
① 열이 납니까?	예 🗆		본인이 치료를		
②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합니까?	예 🗆		희망하는 경우에만		
③ 구토, 구역질이나 설사를 합니까?	예 🗆	조치			
④ 신체일부가 가볍게 찢어지거나 긁혔습니까?	예 🗆		응급 의료		
⑤ 복통이나 근육통을 호소합니까?	예 🗆	센터			
□ 소속 : () 경찰서 □ 계급 : □	성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규칙 별표 상 응급환자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